

가족기업의 지식재산권 승계 전략

‘L’사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02

| 박재원

목차

 가족기업에서 지식재산이 왜 중요한가?

 L사 개요 및 승계 상황

 L사 세무조사 이슈

 가족기업 소유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

 승계 전략 정리

가족기업에서 지식재산이 왜 중요한가?



기업가치가 점차 유형자산 중심 → 무형자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브랜드,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은 기업의 정체성과 경쟁력의 실질적 핵심.



특히 가족기업은 창업자의 개인적 역량·노하우·창의성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지식재산 창출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가 모호해지기 쉬움
이 때문에 상표권·특허권이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되는 관행이 존재.



개인 명의 지식재산을 법인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 세무적 리스크 발생

L사 개요 및 승계 상황



L사는 창업자인 부친이 설립한 제조 기반 가족기업임. 법인의 브랜드 가치가 꾸준히 상승했고, 최근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가업승계 단계에 진입



(상표권) 법인 설립 후 대표가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함. 최근 대표 명의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수령함 (기타소득 처리)



(특허권) 일부 특허를 대표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하여 등록함

L사 세무조사 이슈



세무당국의 주장 요지: “회사가 계속 사용해오던 상표인데, 왜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했는가?”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양도대가도 합리적 가액(시가)인지 의심



특허권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삼지 않았으나, 대표 개인이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양도대가가 합리적인 가액인지 문제를 삼을 여지도 있음

가족기업 소유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 - 상표권



법인 설립 이후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사례 다수.
이는 과거 개인사업자 시절의 관행이 이어진 경우가 많음.



문제는 법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수요자에 대하여 브랜드가치를 구축하였음에도, 상표권이 대표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를 법인에 양도하여 양도대가를 수령하고, 일부 절세혜택을 누림



세무당국은 이를 “회사가 장기간 사용하여 형성한 브랜드 가치를 대표 개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것”
으로 보아, 상표권 양도대가의 손금 불산입을 주장할 수 있음

가족기업 소유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 - 특허권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법구조이므로, 대표 개인 명의로 특허권을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님. 대표이사가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에 관여하였는지 세무관청이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대표가 관여한 발명이 법인의 주된 사업과 밀접하면 '직무발명'으로 인정됨.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했다면, 개인 명의 특허권 자체는 문제 없음. 직무발명일 경우에는 대표 개인의 특허권을 법인으로 승계하면, 법인은 대표 개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발명진흥법의 강행규정)



하지만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이 과다하면 대표에게 세무관청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합리적인 가치산정, 대표의 연구개발 관여 증빙 확보가 필요

가족기업 소유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 - 가치평가



대표 개인 명의의 상표권 · 특허권 이전에서의 핵심 쟁점은 “양도대가의 적정성”
→ 대표는 법인에 대해 특수관계인이므로 양도대가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면 문제될 수 있음.



세무당국의 검토 포인트: 가치평가서 구비 여부, 가치산정의 합리성 등



적정한 가치평가서가 없거나 가치산정의 합리성이 부족하면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소득세 추징 가능

가족기업 소유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 - 세금



상표권 ·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됨.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60% 인정을 받는 점에서 절세효과가 발생함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간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임 → 다만,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대표·임원·지배주주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적정한 가치평가서가 없거나 가치산정의 합리성이 부족하면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소득세 추징 가능

승계 전략 정리



법인 설립 이전에 획득한 대표 개인 명의 상표권 · 특허권은 합리적 평가를 통해 법인으로 양도

→ 전문가의 평가서를 통하여 시가 입증이 필요

→ 양도대가가 과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이 있고, 과소하면 대표 개인의 정당한 보상금청구권이 침해됨. 전문가의 평가서를 통한 합리적 산정이 필수



상표권은 법인 설립 이후에는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사가 사용하던 브랜드를 대표가 사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배임 가능성)



특허권은 법인 설립 이후에도 대표 개인 출원은 가능하며, 특허권을 법인으로 양도 가능함

→ 대표 개인이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한 증빙으로서, 연구노트 등의 증빙 필수

→ 회사가 특허권을 승계할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의무(발명진흥법) 있음



상표권 · 특허권은 ①현물출자(신주 발행), ②주식 양도(구주 양도), ③현금지급 방식으로 이전 가능

감사합니다!